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-67호

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 
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
2025. 10. 17.

식품의약품안전처

#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-67호

##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
### 1.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교육기관의 수지결산 내역을 매년 보고받고 있어 교육기관이 영업 신고관청에게 매월 보고하는 교육실시결과 내용 중 교육비 수지결산 내역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, 교육기관에서 교육대상자 확인을 하거나 교육실시결과 보고를 할 때 「식품안전기본법」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.

### 2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

(1) 행정예고(공고 제2025-378호, '25.8.29~9.19)

(2)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('25.10.13) : 비대상

##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-67호

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「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-64호, 2024. 10. 1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5년 10월 17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###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
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통보하고”를 “통보(교육기관의 장이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교육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)하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전자문서로 하는”을 “전자문서 또는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는”으로, “보고하여야”를 “보고(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)하여야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안전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

### (신고관청 제출용)

**1. 교육기관 내역**

기관명칭		대표자	
소재지		전화	
지정일자		FAX	

**2. 교육대상자별 교육실적**

업종별 교육대상자	교육계획 인원(명)	교육수료인원(명)		
		온라인	집합	계
총 인원				
신규 교육				
보수 교육				

**3. 회차별 안전위생교육 결과(온라인 교육 제외)**

구분	교육일시	교육장소	수료인원(명)	비 고
계				

**4. 교육수료자 명단 : 별도첨부**

**5. 기타사항**



제8호 서식의 교육실시결과 보고서  
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  
여야 한다.

④ · ⑤ (생략)

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  
망을 이용하는 -----  
----- 보고(전자  
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  
다)하여야 ---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